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공개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2. 1. 25.(화) 14: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문 화 재 위 원 회**

##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 【심의사항】

1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2차)	
2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 현상변경	
3	2022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4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검토사항】

5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구 청년회관」 종합정비계획 검토	
6	「오지호 일가 불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7	「터우5형 700호 증기기관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8	「협궤 디젤동차 163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9	「대통령 특별 동차(본동, 경호동)」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0	「협궤 객차 18011호, 1801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1	「증기운행기증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2	「디젤전기기관차 4001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보고사항】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

## 1.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2차)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에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에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12.21.) : 보류
  - 사유 :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추가자료 보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제550호, '19.4.8.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3구역(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6m이하)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m이격
    - 신청내용 :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역사공원 조성(2,797.6㎡)
      - 도로확장 : 심우장 동측 도로 기존 폭 2m → 3m
- <보완사항>
- 개별정비지구 : 1구역 단독주택 현황 존치  
2구역 경사지붕 10.2m (허용기준 이내)
  - 공동정비지구 : 지붕 평지붕 → 경사지붕 변경, 최고높이 17.919m  
입면 마감재 변경(전체 페인트→일부 목재, 석재 등)  
지상 입면을 테라스형으로 변경 등

## 2.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의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제688호, '17.8.8. 등록)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당해문화재 외관 보수정비 등
    - 변형된 정면 및 배면부 1층 외벽 마감 변경  
(대리석, 판넬→벽돌, 창호, 디자인블럭, 타일)
    - 기존 출입구 필로티 구역 벽체 해체 및 유리 커튼월 설치
    - 기존 출입구 필로티 구역 일부 벽체 신설
    - 우측면 중정 진입통로 신설
    - 엘리베이터 및 설비샤프트 설치
      - ※ 설비샤프트 설치 위치(1안: 중정, 2안: 공조실)
    - 중정 출입문 창문으로 변경설치
    - 공조실 출입문 설치
    -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 전단벽 설치 및 기초 보강(전단벽 설치 위치)

### 3. 2022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 가. 제안사항

2022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대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함
  - 1차 평가회의 : '21.8.3.(화) / 평가위원 : ○○○, ○○○, ○○○, ○○○, ○○○, ○○○
  - 2차 평가회의 : '21.11.30.(화) / 평가위원 : ○○○, ○○○, ○○○, ○○○, ○○○, ○○○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사업기간 : 2022년 1월 ~ 사업 종료 시까지
- (3) 사업대상
  -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14	1,020,000	714,000	306,000
국가등록	시설물	114	23,129,928	11,564,964	11,564,964
	동산	19	1,694,600	847,300	847,300
	근대역사문화공간	14	8,455,580	4,227,790	4,227,790
	소계	147	33,280,108	16,640,054	16,640,054
합계		161	34,300,108	17,354,054	16,946,054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6	9,362,200	4,681,000	4,681,000

※ 유보액 819,000천원(국비)은 추가 신청 후 지원 검토 예정(2월)

○ 문화재 재난안전(전기, 소방, 방범, 방재 IoT) 구축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1	30,000	21,000	9,000
국가등록	22	766,432	437,868	328,564
<b>합 계</b>	<b>23</b>	<b>796,432</b>	<b>458,868</b>	<b>337,564</b>

(4)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주요사업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근대문화재과) 설계검토·승인
    - 단순 보수 등 기타 사업 : 지자체 설계 검토
  - 지자체 : 설계도서 작성, 지방검토사업 설계 검토·승인, 사업시행, 사업 감독 등
- ※ 중요 사안은 단위 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별도 검토 후 사업 시행**

(5) 행정사항

- 2022년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4.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동학농민군 편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1.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동학농민군 편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동학농민군 편지	1점	21.2×40cm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19.) : 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북도→문화재청)
- ('21.10.1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11.23.) :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동학농민군 한달문 한글 편지」에서 「동학농민군 편지」로 추진

- (5) 등록예고 : '21.12.7.~'22.1.5.(30일간) \* 의견 없음



## 5.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구 청년회관」 종합정비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구 청년회관」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목포 구 청년회관」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구 청년회관」('02.9.13. 등록)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차범석길35번길 6-1 (남교동)
- (3) 세부내용
  - 사업예산 : 80,000천원 (국비 40,000천원, 지방비 40,000천원)
  - 사업내용 :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산 내에 안전진단 포함)
    - 정비계획
      - 단기 : 지붕 정비(철골트러스+샌드위치판넬 → 목재트러스+골형강판) 좌측 입구 처마 설치, 바닥포장, 석재 보존처리, 소화 및 방범시설 설치, 안내판 정비, 화장실 개축
      - 중기 : 골목길 벽화정비, 골목길 바닥포장
      - 장기 :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정비, 휴게시설 정비
    - 활용계획
      - 상시 개방 용도로 활용
      - 항일 노동 운동 중심으로 근대 청년인물콘텐츠 전시
      - 기존 공간을 카페, 문화공연 및 토론 장소 등 다목적으로 활용

## 6. 「오지호 일가 불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원효사 소장 「오지호 일가 불화」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오지호 일가 불화」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5.14.)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원효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현 소재지
오지호 일가 불화	3건 3점	166×212.4cm 등	1954~55 년	원효사 (광주광역시 북구)	(위탁)전남 순천시 송광면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5.14.) : 문화재 등록 신청(광주광역시→문화재청)
- ('21.11.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7. 「터우5형 700호 증기기관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철도박물관 소장 「터우5형 700호 증기기관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터우5형 700호 증기기관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터우5형 700호 증기기관차	1대	18,000×2,997×4,232	1914년	철도박물관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9.)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1.11.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8. 「협궀 디젤동차 163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철도박물관 소장 「협궀 디젤동차 163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협궀 디젤동차 163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19.)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협궀 디젤동차 163호	1대	14,100×2,400×3,200	1965년	철도박물관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9.)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1.11.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9. 「대통령 특별동차(본동, 경호동)」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철도박물관 소장 「대통령 특별동차(본동, 경호동)」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통령 특별동차(본동, 경호동)」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대통령 특별동차 (본동, 경호동)	4량 (2량 2세트)	25,000×3,000×4,400	1969년 1985년	철도박물관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9.)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1.11.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10. 「협궀 객차 18011호, 1801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철도박물관 소장 「협궀 객차 18011호, 1801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협궀 객차 18011호, 1801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 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협궀 객차 18011호, 18012호	2량	14,100×2,400×3,200	1965년	철도박물관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9.)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1.11.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11. 「증기운행기중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철도박물관 소장 「증기운행기중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증기운행기중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 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증기운행기중기	1대	6,800×2,200	1928년	철도박물관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9.)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1.11.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12. 「디젤전기기관차 4001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강원도 철원군 소장 「디젤전기기관차 4001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디젤전기기관차 4001호」의 문화재위원회('17.5.23.) 검토 결과 보류 건으로, 관계 전문가 현지 제조사('21.12.2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17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17.5.23.) : **보류**  
· 사유 : 보완 조사 후 등록 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m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디젤전기기관차 4001호	1대	14,325×2,875×3,850	1963년	철원군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흥원리 703-6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6.9.22.) : 문화재 등록 신청(강원도→문화재청)
  - ('17.5.23.) : '17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보류  
- 사유 : 보완조사 후 등록 검토
  - ('21.12.29.) : 문화재 등록 검토 제조사 실시



###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인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제545호)	전북 군산시	군산시청	<p>&lt;군산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gt;</p> <p>(1) 허가 받는 자 : 군산시청</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위치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li> <li>○ 내 용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캐노피 증축(67.42㎡)</li> <li>- 전망대 캐노피 증축(57.92㎡)</li> <li>- 공사용 가설물 설치 등</li> </ul> </li> </ul> <p>(3) 허가기간 : '22.1.10.~12.31.</p> <p>(4)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부의 구조체를 최소화하고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현상변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li> </ul>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lt;'22.1.5. / 문화재전문위원 ○○○&gt;</li> <li>- 구 군산세관 본관에 인접한 군산근대역사 박물관의 정면 1층 주출입구 부분의 확장과 3층 전망대 부분에 캐노피를 신설하는 공사임</li> <li>- 주출입구의 기존 캐노피 하부를 실내화하여 매표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li> <li>- 캐노피 하부를 실내화하는 공사 내용 자체는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전망대 캐노피는 우천이나 강설시 이용하는 편의를 위한 시설로 문화재의 경관과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증축부의 구조체를 최소화하고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현상변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li> </ul>	조건부 허가	'22.1.10.